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4. 30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4월 9일

나. 발 의 자: 이성수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4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지원대상으로 안 제14조(협력체계 구축)에 규정된 대상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, 지원종류 또한 “경비”에서 “경비 및 물품 등”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단체 등에서 양질의 교통안전사업(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)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구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4. .

발의자: 이성수 의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교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4. 00. ~ 4. 00.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제13조 및 제15조”를 “제13조부터 제15조”로 하고, “법인 및 단체에게”를 “경찰서, 법인 및 단체 등에게”로 하며, “예산 범위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고, “경비를”을 “경비 및 물품 등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재정 지원 등) 구청장은 <u>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교통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</u>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재정 지원 등) ----- <u>제13조부터 -----</u> ----- <u>경찰서, 법</u> <u>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</u> <u>에서 ----- 경비 및 물품 등을 -</u> -----.</p>